

※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단 공고 제2025-03호

2025년도 제3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 통합공고문 및 안내서

2025년도 제3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관련기관 및 연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9월

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단장

목 차

I. 공고개요	1
1. 지원규모 및 내용	1
2. 추진절차 및 일정	2
II. 신청요건	4
1.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	4
2. 신청 제한	4
3.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	5
4. 박사후연구원 고용증빙 서류 제출	5
5. 선정평가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요청	6
6.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보고	6
III. 신청방법	7
1. 공고 및 접수기한	7
2. 신청 방법	7
3. 제출 서류	8
4.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	9
5.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	9
6. 연구개발계획서 작성	9
IV.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	10
1. 평가 절차	10
2. 평가방법 및 기준	10
V. 향후 연구사업 관리	12
1. 협약변경	12
2. 중간보고	12
3. 최종평가	13
4. 성과관리	13
VI. 관련 법령 및 규정	15
VII. 문의처	15

I. 공고 개요

① 지원규모 및 내용

○ 지원기간 : 2년 이내

※ 심의위원회 승인 연구기간 내에서,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을 9개월로 하여 총 21개월 이내 지원

○ 지원분야

-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: 희귀·난치질환 등 다양한 환자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 검증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
-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지원 : 선행 임상연구를 첨단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치료기술로 연계하기 위한 후속 연구 지원

○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

구 분	공고단위(RFP 명)		지원 규모 (1차년도)	선정 예정 과제수	지원기간	지원 대상		
1.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	1-1. 고위험		10억원 이내/년 (7.5억원 이내)	3개 이내	2년 이내 ※ 1차년도 9개월	보건복지부로 부터 적합 승인 통보를 받은 임상연구 ※ 고위험의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 추가 승인 필요		
	1-2. 중위험		5억원 이내/년 (3.75억원 이내)					
	1-3. 저위험		3억원 이내/년 (2.25억원 이내)					
2.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	2-1. 지속형	2-1-1. 고위험	10억원 이내/년 (7.5억원 이내)	2개 이내				
		2-1-2. 중위험	5억원 이내/년 (3.75억원 이내)					
		2-1-3. 저위험	3억원 이내/년 (2.25억원 이내)					
	2-2. 심화형	2-2-1. 고위험	10억원 이내/년 (7.5억원 이내)					
		2-2-2. 중위험	5억원 이내/년 (3.75억원 이내)					

*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제13조, 시행령 제11조~제13조, 복지부령 제9조, 총리령 제4조, 「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·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“적합” 통보를 받은 임상연구 계획만 지원 가능

※ 각 사업별 상세 지원내용은 [별첨1] 제안요청서(RFP)를 확인

② 추진절차 및 일정

○ 추진절차

임상연구계획 승인	재생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시,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여부 심의 결과 통보
신규과제 공고	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단
신규과제 신청·접수	적합 및 승인 통보받은 임상연구계획만 신규과제 신청 가능
선정평가	사전검토, 선정평가, 운영위원회 심의 단계를 거쳐 선정과제 확정 및 선정결과 공고 진행
협약체결	사업단과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체결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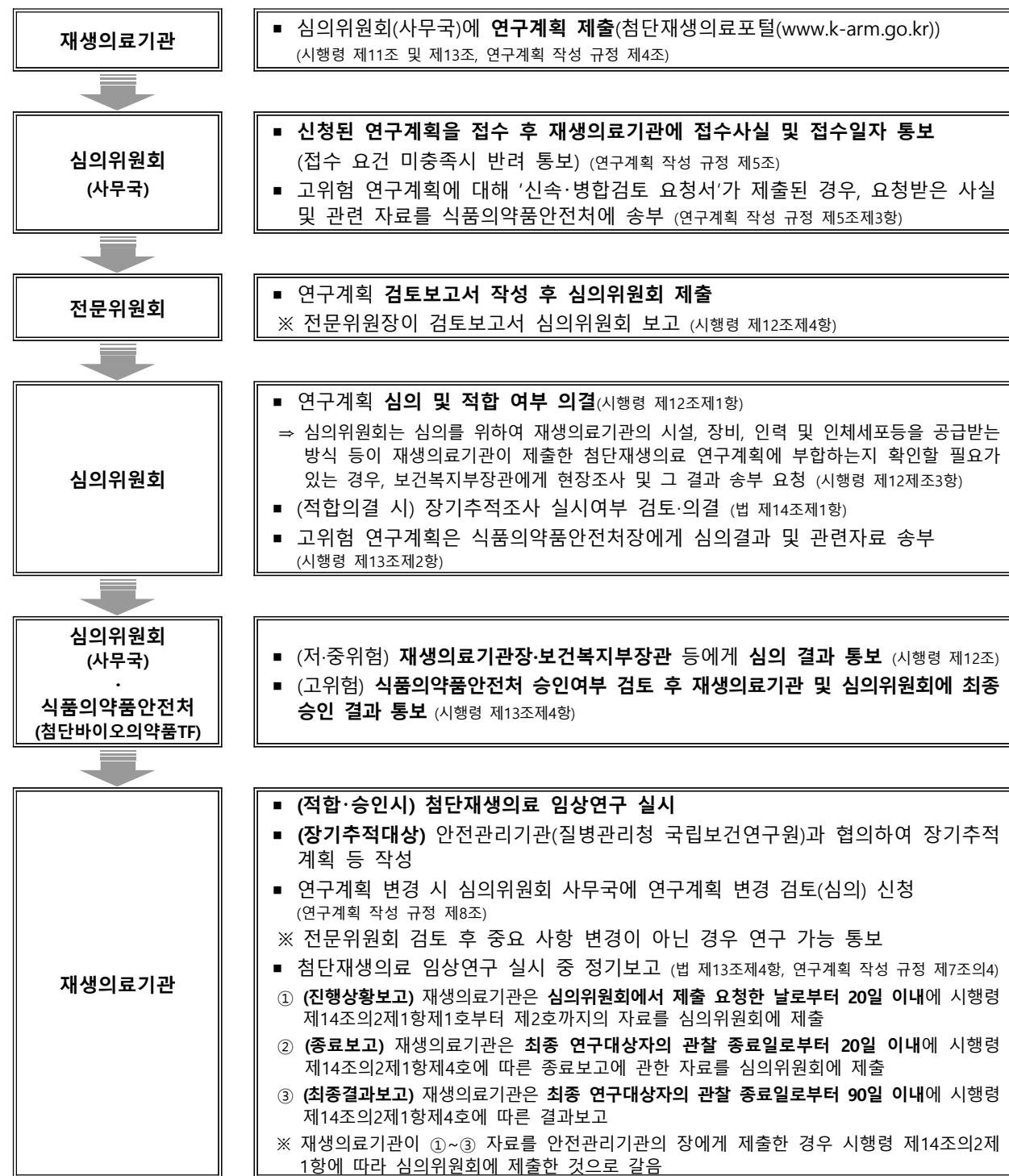
○ 추진일정

2025. 9. 23.	'25년도 제3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
2025. 10. 24.	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제출(전산입력) 마감(~16:00)
2025. 10. 24.	신청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 승인 마감(~16:00)
2025. 10월 말	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
2025. 11월 초	평가 일정 사전 안내,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
2025. 11월 중	선정평가 실시
2025. 11월 말	운영위원회 심의 및 선정결과 공고
2025. 11월	과제 협약 및 연구개시

*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임상연구 실시 절차

- 법 제12조 및 제13조, 시행령 제11조~제13조, 복지부령 제9조, 총리령 제4조, 「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·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(이하 “연구계획 작성 규정”)」 제4조~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음



* 출처 :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, 2025.08.,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

II. 신청 요건

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

-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
 -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「법 제10조 및 복지부령 제3조」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 필요
 - 법 제10조 (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) 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"의료기관"이라 한다)은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,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.
 - 실시기관으로 협약 불가시, 연계된 대학(산학협력단)으로 지원 가능
 - ※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는 경우, 연구개발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해당 실시기관 소속임을 증빙해야 함
- 연구책임자는 해당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소속 연구 인력이어야 함
 - ※ 연구과제 수행 중 (정년)퇴직, 이직 등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, 과제 신청 시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

② 신청 제한
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에 따라 참여 제한 중인 자는 신청 할 수 없음. 단,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 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가능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자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)에

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3개임. 공동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임

- ※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
- ※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 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
- 연구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
※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-105호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」 참조

③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)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
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‘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’를 작성·첨부 하여야 함
-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할 경우 ‘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 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’에서 심의 실시(선정과제 별도 안내)

④ 박사후연구원 고용증빙 서류 제출

- 신규과제로 선정될 경우, 참여연구원 중에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

⑤ 선정평가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청

- 선정평가 시 제출된 연구계획에 대한 자료 보완 요청 시 연구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
- 심의위원회의 적합 통보된 임상연구 계획에 대해 사업단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,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

⑥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보고

- 임상연구 정보의 등록 및 기록의 보고
 -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임상연구에 대한 과제개요 등 관련 정보 및 진행 중인 임상연구에 대해 임상연구 진행사항, 연구 대상자의 등록 및 증례기록, 이상반응의 발생 현황 등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
-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·보고·공개
 -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 연구성과물 전담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
- 예상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
 - 과제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
 -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시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시점, 총 연구기간 종료 시점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성과, 즉 논문게재, 특허 출원 및 등록, 사업화 등을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함

III. 신청 방법

① 공고 및 접수 기한

공고대상	공고기간	연구책임자 과제신청 마감(전산입력)	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 마감일시
1.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	2025. 9. 23.(화) ~ 2025. 10. 24.(금) 16:00	2025. 10. 24.(금) 16:00	2025. 10. 24.(금) 16:00
2.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			

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 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,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

② 신청 방법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에 접속 후 화면 중간의 Quick Menu에서 ‘사업공고’ 클릭하여 전산입력,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파일 업로드(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)

※ 과제신청 시 신청기관(등록) 및 참여 연구원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함

- 참여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등록정보가 현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‘국가 연구자 정보시스템’에서 갱신 필요
- 전산입력 시 과제명, 요약문, 연구개발기관 정보, 연구자 인적사항, 참여연구원, 연구비 등을 입력 후 연구개발계획서·첨부서류 서식에 따른 내용 작성 및 hwp파일 업로드

※ 전산입력 시 www.iris.go.kr → [알림·고객] → [자료실] → IRIS사용 매뉴얼 참조

③ 제출 서류

- 접수 시 모든 서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에첨부문서로 업로드
 - 연구개발계획서는 총 50페이지 이내로 작성
 -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미비 시 과제접수 불가
- ※ 임상연구 계획 적합 통보서(공문)를 받지 못한 경우 심의 신청서로 제출 가능.
단, 10.31.(금)까지 적합 통보서(공문)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접수 인정

구분	제출 서류(첨부파일)	
필수	첨부1	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 적합 통보서* 및 임상연구계획서** * 공문(고위험의 경우 식약처 공문 제출)과 심의결과(심의종합의견) 모두 포함 ** '연구비의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내 연구비 세부내역 표' 필수 포함
	첨부2	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
	첨부3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
	첨부4	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승인서 ※ 승인 통보를 받기 전인 경우 심의 신청서를 제출해야함
	첨부5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※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 모두 작성 필요
	첨부6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 ※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 모두 작성 필요
	첨부7	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(주관연구책임자의 3책5공 확인)
	첨부8	마일스톤(Milestone) 목표
	첨부9	임상연구비 세부내역서 ※ 견적서 및 세부내역(첨부9-1) 모두 작성 필요
	첨부10	연구개발성과 등록·기탁 동의서
해당시	첨부11	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 제공·활용 동의서 ※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사업 중 연구책임자가 선행 임상연구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출 해당
	첨부12	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 통보서
	첨부13	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
	첨부14	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(3천만원 이상 장비 구축 시 제출 필수)
	첨부15	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(1억원 이상 장비 구축 시 제출 필수)

※ 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첨부서류 모두를 활용하여 평가

④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

-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
 - ※ RFP 및 관련·규정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연구비 결정시 조정하여 지원될 수 있음
- 간접비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[별표6]에 따라 계상하며, 총 연구개발비 내에 포함됨

⑤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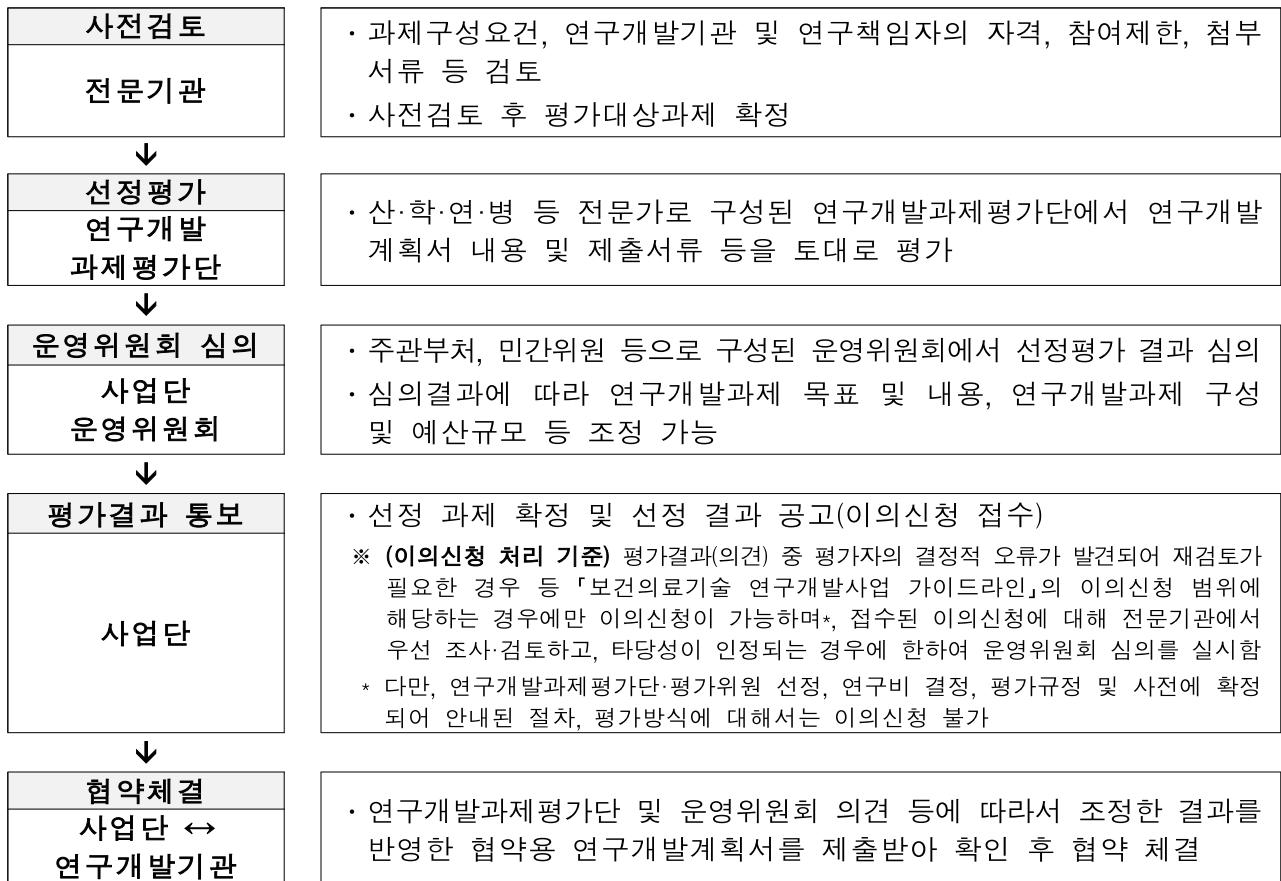
-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이 원칙이나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65조제4항에 따라 영리기관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
- 시험·분석·검사·임상 등은 용역연구로 수행가능하며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(외부전문기술활용비)에 계상. 본 사업은 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직접비의 40%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
- 연구 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한해 구입한 취득원가의 20% 이내로 산정하며,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 하여야 함
-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114조에 따라 계상

⑥ 연구개발계획서 작성

- '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양식'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www.iris.go.kr) 사업공고 붙임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
 - ※ 별도의 인쇄본 제출은 없음
- 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첨부서류 모두 활용하여 평가함

IV.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

① 평가 절차



② 평가 방법 및 기준

□ 평가 방법

○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함

-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는 발표평가 대상이 되며,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해 연구책임자의 이메일로 통보(발표평가 비대상 과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)
- 발표자료 제출 기한은 서면평가 후 발표 일정과 함께 연구책임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
- 발표평가 당일 질의응답(Q&A) 진행

□ 평가 기준

평가 항목	세부항목 및 내용	배점
연구 개발 계획 (30)	<p>① 연구개발과제의 중요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공익적 가치)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, 희귀·난치질환 등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 공익적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됨 - (시급성) 대상질환의 중요성(사망률, 질병부담, 사회적 비용 등) 및 환자 예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시급히 수행해야 하는가 	10
	<p>② 연구의 혁신성·독창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법인가 	10
	<p>③ 연구목표의 구체성,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안요청서(RFP)의 목표와 지원내용에 부합하는가 - 연구목표가 명확하고 측정가능하며 달성 가능한가 - 연구범위가 목표 달성을 부합하고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	10
연구 수행 방법 및 내용 (40)	<p>④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 체계의 효율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설계(연구기간, 대상자 수, 임상 연구 방법, 안전관리 등)에 따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는가 	20
	<p>⑤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비(임상연구 소요예상 비용 등)의 합리적 산출 	20
연구 수행 능력 (20)	<p>⑥ 연구수행자의 전문성 및 운영 능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경험, 전문성 및 기술력 보유 정도 등 연구역량 -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-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(데이터 유실, 연구윤리문제, 자원부족, 예기치 못한 외부 변수 등)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실행 능력 	15
	<p>⑦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·시설 보유·협력 인프라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조직 및 인프라 보유 	5
연구 개발 기대 성과 (10)	<p>⑧ 성과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연구결과의 파급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과 확산 계획 마련 여부 - 예상되는 성과가 임상현장에 적용될 가능성 - 후속 연구(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) 인용 등 성과활용 계획의 구체성 - 연구성과가 재생의료산업 발전 등 활용 가능성(제품화, 실용화 등) - 연구결과가 치료 활용, 국민건강증진, 질병극복, 공공복지실현에 기여함 	10
총 계		100

V. 향후 연구사업 관리

① 협약 변경

□ 연구책임자 변경

- 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
 - 다만, 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(사망, 장기 입원 등), 퇴직, 부서 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. 이때 반드시 사업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
- 공동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단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(다만, 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연구 책임자 변경은 불허함)

□ 연구개발기관 변경

- 연구개발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

※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협약 변경 요청

② 중간보고

-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2개년도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「연차보고서」를 해당년도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이를 검토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함
- 사업단에서는 각 연구수행기관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 후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- 사업단은 필요 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. 이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③ 최종평가

-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「최종 보고서」를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함. 사업단은 이를 제출 받은 후 「최종보고서」 평가를 시행함
※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, 행정제재(참여제한, 사업비 환수 등) 및 새로운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대상이 될 수 있음
- 게재 논문 및 특허는 지원과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만 인정

④ 성과관리

□ 연구성과활용 현황의 보고

-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(과제) 종료 후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작성한 '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'에 따른 이행실적(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특허출원/등록증 사본, 기타 시제품, 제품화 등)과 이의 활용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

□ 연구성과의 홍보

- 연구종료 전·후 연구성과 발생(논문게재, 특허 출원·등록 등)일로부터 1개월 이내,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에 입력함
-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함
 -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, 발표내용을 전문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

- 국내 · 외 (전문)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 출원할 경우, 아래와 같이 사사 표기

※ (국문표기) “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(과제고유번호: RS-2025-00000000).”

※ (영문표기) “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&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(KHIDI),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& Welfare, Republic of Korea (grant number : RS-2025-02183112).”

□ 지원 제외 처리기준

- 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-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,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 -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관 및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신용 불량 상태이거나 금융 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
 - 신청자격, 신청과제의 목적 및 내용이 공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 -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

VI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·관리규정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가이드라인」 등

※ 상세내용은 www.htdream.kr → 자료실→ 법규/서식에서 확인 가능

※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

※ 향후 과제관리 등 공모안내서와 RFP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(총괄규정)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·관리규정
- (평가관련)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
- (연구비 관련)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
- (연구시설장비 관련)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- (연구노트 관련)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
- (성과관리 관련)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

VII. 문의처

① 사업공고 열람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

② 문의처

- 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단

구 분	공고단위(RFP 명)	사업내용(RFP)안내		평가 일정/절차 안내	
		담당자	연락처	담당자	연락처
1.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	1-1. 고위험	오수경	cr@rmaf.kr	오수경	cr@rmaf.kr
	1-2. 중위험				
	1-3. 저위험				
2.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	2-1. 지속형	2-1-1. 고위험	cr@rmaf.kr	오수경	cr@rmaf.kr
		2-1-2. 중위험			
		2-1-3. 저위험			
	2-2. 심화형	2-2-1. 고위험			
		2-2-2. 중위험			